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
------------	----

제출년월일 : 96. 1.
제 출 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공무원복무규정개정(대통령령 제14825호, 1995. 12. 14)에 따라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 고양을 위한 경로호친휴가 부여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근무상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7조)
- 나. 호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공무원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 (안 제18조)
- 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0조제4항)
- 라. 공무원건강진단 및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 마.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제5항제5호)
- 바.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연가보상비 증액예상액 96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

다. 합의 : 내무부 지공 12100-490 ('96. 12. 23)호 및 서울시 인사 12100-4 ('96. 1. 3)호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 시달됨.

라. 기타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단서중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을 "(근무시간등의 변경 및 연장)"으로 하고, 동조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1년이상 2년미만	10 일
2년이상 3년미만	13 일
3년이상 4년미만	16 일
4년이상 5년미만	19 일
5년이상 6년미만	22 일
6년이상	23 일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근속기간의 계산) 제18조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의 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1일로 계산한다."

제23조제1호 및 제3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할 때"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제24조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24조제6항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u>당직근무자</u> (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u>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u>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u>당직근무자는</u>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u>당직근무에</u>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u>당직 및 비상근무자</u> . <u>당직 및 비상근무</u>
③ <u>당직근무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u>당직 및 비상근무</u>
제9조(파견근무) ①·② (생 략)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재외공무원복무규정</u> 을 준용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u>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시간

제13조(근무시간) ① (생 략)

⑥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만약,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
하는 경우는?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
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사
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
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1년이상 2년미만	8 일
2년이상 3년미만	11 일
3년이상 4년미만	14 일
4년이상 5년미만	17 일
5년이상	20 일

제2장 근무시간등

제13조(근무시간) ① (현행과 같음)

중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및 연장)

시간 또는 고무알 고무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기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22일
6년이상		23일

제19조(근속기간의계산) 제18조의 근속기간
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근속기간의 계산) 제18조의 근속기간
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
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
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
한다) ·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
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
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
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 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1조 (연가일수에의 산입) ① 결근일수 ·
휴직일수 ·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
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② (생략)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
휴직일수 ·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
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후단신설)

다만,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병가일이 7일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접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생 략)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생 략)

< 신 설 >

< 신 설 >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2조(병가) ①

.

.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침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제23조(공가)

.

.

1.

.

.

참가할 때

2. (현행과 같음)

3.

참가

할 때

4. (현행과 같음)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

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 4 (생 략)

< 신 설 >

< 신 설 >

⑥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①

. 경조사휴가

② 출산휴가

③ 여성 보건휴가

④ 수업휴 가

⑤ 포상휴가

1 ~ 4 (현행과 같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다.

⑦ 퇴직준비휴가